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41,708,195	19,251,246
일반회계	570,827,373	17, 124,821
특별회계	70,880,822	2,126,425
공기업특별회계	43,575,827	1,307,27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575,827	1,307,275
기타특별회계	27,304,995	819,1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7,323	19,420
자활기금특별회계	2,206,105	66,18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41,016	40,2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1,500	6,645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17,000	6,510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704,945	51,148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0,255	6,008
수질개선특별회계	20,766,851	623,006

-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조 (명시이월사업): "해당없음"
-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3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 · 재난목적예비비는 3,407,656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